

[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(안) 전후 대비표]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2조(용어 정의) (생략) 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<u>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</u>를 말한다. <신설> <신설> 2. ~ 4. (생략) 5. “고유식별정보”란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</u>를 ---. <u>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</u> <u>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u> <u>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</u> <u>1의2. “가명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「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」(이하 “세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정보를</u> ---.	·용어 정비 ·하위 목 신설에 따른 내용 정비 ·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른 본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1호의2 신설 ·법률 반영 및 세칙 위임에 따른 내용 정비

현행	개정(안)	비고
6. “민감정보”란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<u>유전정보, 범죄경력</u>을 말한다. 7. · 8. (생략) <u><신설></u>	6. ----- ----- -----로서 <u>세칙으로 정하는 정보를</u> ----. 7. · 8. (현행과 같음) <u>9. “과학적 연구”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.</u>	·세칙 위임에 따른 내용 정비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9호 신설
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~ ⑥ (생략) ⑦ 공사는 개인정보의 <u>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</u>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⑧ (생략)	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를 <u>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</u>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<u>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</u> -----. ⑧ (현행과 같음)	·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
제5조(다른 내규와의 관계)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「신용정보업무규정」, 「<u>보안규정</u>」 등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5조(다른 내규와의 관계) ----- -----「<u>전산정보보호규정</u>」 ----- -----.	·개인정보의 기술적·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측면에서 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규로 정비
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① 사장은 「<u>업무분장규정</u>」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(이하 “주무부서”라 한다)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.	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① ---- 「<u>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</u>」----- 부서(이하 “주무부서”라 한다)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<u>이하 “보호책임자”라 한다</u>)로 -----.	·현행 내규 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 ·약칭 사용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② <u>개인정보 보호책임자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③ 공사는 <u>개인정보 보호책임자</u>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제7조(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) ① · 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내규에 의하거나 <u>개인정보 보호책임자</u>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0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1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)	② <u>보호책임자</u>는 -----. ③ --- <u>보호책임자</u>를 -----. 제7조(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보호책임자</u>가 ----- 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제10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제11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)	·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·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·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3항 신설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4항 신설

현행	개정(안)	비고
① ·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</u>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 6. · 7. (생략) ③ (생략) ④ 공사는 <u>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·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</u>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4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은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, 다른 법령에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5. ----- ----- 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<u>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----- 6. ·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 <u>제2항 각 호에</u> ----- ----- ----- 기록·관리 <u>하여야 한다.</u>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공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</u> 제14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	· 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2항제4호 삭제 · 약칭 사용 · 법률 반영에 따른 내용 정비(본조 제6항 신설에 따른 일부 내용 삭제) · 법률 반영에 따른 본조 제6항 신설

현행	개정(안)	비고
에는 그에 따르고 구체적인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업무별 분임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상의를 거쳐 산정하여야 한다. ③ · ④ (생략) 제21조(안전조치의무) 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2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6. (생략) <u>7.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</u> 8. (생략) ② (생략) 제2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 ① 사장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	----- ----- ----- 보호책임자와 ----- 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안전조치의무) ----- ----- 유출·위조·변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 ① 보호책임자는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)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 ① -----	·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·법률 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 ·약칭 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3호의2 신설 ·법률 개정에 따른 본조 제1항제7호 삭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하고 그 결과를 <u>행정안전부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장은 영향평가를 <u>행정안전부장관</u>이 지정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제2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 제25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관리)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행정안전부장관에게</u>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· ③ (생 략) <신 설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</u>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가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관리) ① 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공사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	·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·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· 감독기구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·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2 신설 및 본조 제1항, 제2항 신설

현행	개정(안)	비고
<신설>	<u>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</u> 제26조의3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) ①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	·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3 신설 및 본조 제1항, 제2항 신설
<신설>	제26조의4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 ① 공사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 ② 공사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·파기하여야 한다.	·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4 신설 및 본조 제1항, 제2항 신설
<신설> <신설>	제26조의5(가명정보의 적용범위) 가명정보는 제14조, 제15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부칙(4)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	·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5 신설